

교육 · 훈련 연기신청서

*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실명확인		처리기간		즉시		
신청인 인적사항	성명			생년월일						
	전자우편			전화번호			휴대전화번호			
	주소									
분야 등	기술분야					등급				
	자격증 등록번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									
교육기한	당초 년 월 일									
연기사유										
연기사유 해당기간	년 월 일 ~			년 월 일			변경교육기한		년 월 일	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·훈련 연기를 신청합니다.

의
의
의

성명(본인)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○ ○ 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건설기술인의 교육·훈련 연기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), 나목 3) 또는 다목 3)에 따른 교육·훈련에 한합니다.
2. 건설기술인은 질병 · 임대 ·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·훈련을 연기하는 경우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 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3. 연기사유는 교육이후 시 한 내 교육·훈련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십시오.
4. 대리인 신고 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(신청인) 및 신고인의 신분증(사본 가능)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
대리신고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연락처
본인확인	방법	확인자	(서명 또는 인)